# (간편)[난이도별]신수술특약 (무배당, 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






## 약 관 목 차

## 제1편 일반사항

[특약 약관] 제1편 일반사항 참조

## 제2편 개별사항

#### 제1관 용어의 정의 등

제2-1조 특약의 보장개시

제2-1조의2 개별 용어의 정의

제2-1조의3 "급여수술"의 정의와 장소

제2-1조의4 "입원"의 정의와 장소

제2-1조의5 "통원"의 정의와 장소

제2-1조의6 보장계약 등의 정의

#### 제2관 보험금의 지급

제2-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

제2-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

제2-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

제2-5조 사고증명서

제2-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

제2-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

####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2-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

제2-8조의2 "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"에 대한 특칙

제2-8조의3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

제2-9조 특약의 소멸

####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

제2-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

## 제2-11조 해약환급금

## 제5관 기타사항

제2-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

[부표2-1] 보험금 지급기준표

[부표2-2] 수술보장대상 질병 및 재해분류표

[부표2-3] 수술방법별 급여수술 분류표

# (간편)[난이도별]신수술특약 (무배당, 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
- ※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장이 가능합니다.
- ※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종목에 따라 특약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- 일반심사형의 경우: "(간편)" 부분이 없습니다.
- 일반형의 경우: "(무배당, 해약환급금 미지급형)" 부분이 "(무배당)"으로 변경됩니다.
- ※ "간편심사형"과 "일반심사형" 모두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- ※ 이 특약은 제2-1조의6(보장계약 등의 정의)에서 정한 총2개의 보장계약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.

## 제1편 일반사항

[특약 약관] 제1편 일반사항 제1-1조부터 제1-13조까지를 이 특약 "제1편 일반사항" 으로 합니다.

※ [특약 약관] "제1편 일반사항"의 위치는 목차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.

## 제2편 개별사항

#### 제1관 용어의 정의 등

## 제2-1조 특약의 보장개시

- ① 회사는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 또한,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-13조[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] 및 제2-8조의2["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"에 대한 특칙]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(효력회복)일로 합니다.

#### 제2-1조의2 개별 용어의 정의

제1-2조(용어의 정의) 외에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- 1. 의사 : 의료법 제5조(의사·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)에서 규정(<별첨 1> 참조)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하며,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는 제외합니다.
- 2. 수술보장대상 질병 또는 재해 : <부표2-2> "수술보장대상 질병 및 재해분류표"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.
- 3. 요양급여: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말합니다.
- 4. 의료급여: 「의료급여법」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말합니다.
- 5. 수술코드 : <부표2-3> "수술방법별 급여수술 분류표"에서 정한 수술코드를 말합니다.

#### 제2-1조의3 "급여수술"의 정의와 장소

- ① 이 특약에 있어서 "급여수술"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"수술보장대상 질병 또는 재해"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"수술방법별 급여수술 분류표"(<부표2-3> 참조)에서 정한 "아주심한 급여수술" 및 "심한 급여수술"로 분류되는 "수술코드"에 해당하는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.
- ② 제1항의 "수술코드"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수술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하고, "한국형 진단명기준환자군(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, KDRG)" 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된 "ADRG(Adjacent DRG)" 중 회사가정한 코드를 말합니다.

## 한국형 진단명기준환자군(KDRG)

환자의 주진단명 및 기타진단명, 수술처치명, 연령, 성별, 진료결과 등에 따라 진료내용이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, 이 특약의 한국형 진단명기준환자군(KDRG)분류체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·관리하는 KDRG 버전 4.5(2023.1.1 시행)의 ADRG분류체계를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.

## ADRG(Adjacent DRG)

환자의 주진단 범주(Major Diagnostic Category, MDC)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"외과계 그룹"과 "내과계 그룹"으로 분류한 후 시술명, 진단명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.

③ 제1항의 수술코드에서 향후 "KDRG"의 개정으로 동일한 수술에 대해 수술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이 특약 체결 시점에서 정한 수술코드를 따 릅니다. 다만, 이 특약 체결 시점 이후 "ADRG"가 신규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"수술방법별 급여수술 분류표"(<부표2-3> 참조)의 구분에 준하 여 수술코드를 결정합니다.

#### 제3항 설명

- · 특약 체결 시점에 간이식에 해당하는 수술코드는 A010(KDRG 버전 4.5)이였으나, 피보험자가 간이식 수술을 받은 시점의 수술코드가 A080(예시. KDRG 버전 5.0)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회사는 A010(KDRG 버전 4.5)에 해당하는 급여수술 급여금을 지급합니다.
- ·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술받은 시점의 "주진단 범주(MDC)와 시술명"을 이 특약 체결 시점의 "KDRG"기준을 적용합니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 시점에서 급여항목으로 분류된 수술이 향후 비급여항목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.

## 제2-1조의4 "입원"의 정의와 장소

이 특약에 있어서 "입원"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.

## 제2-1조의5 "통원"의 정의와 장소

이 특약에 있어서 "통원"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.

#### 제2-1조의6 보장계약 등의 정의

이 특약은 "수술방법별 급여수술 분류표"(<부표2-3> 참조)에서 정하는 수술종류에 따라 "아주심한 급여수술 보장계약", "심한 급여수술 보장계약"으로 이루어집니다. 계약자는 각 보장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하며, 각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(이하 각 보장계약을 합하여 "특약"이라 합니다)

- 1. 아주심한 급여수술 보장계약 :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-2조 (보험금의 지급사유)에서 정한 아주심한 급여수술급여금을 보장받기 위한 계약
- 2. 심한 급여수술 보장계약: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-2조(보험 금의 지급사유)에서 정한 심한 급여수술급여금을 보장받기 위한 계 약
- ※ 각 보장계약별 보장내용, 유지, 감액 등이 다르므로 각 조항을 꼭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제2관 보험금의 지급

### 제2-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

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각 보장계약에 해당하는 보험금(<부표2-1> "보험금 지급기준표" 참조)을 지급합니다.

## [아주심한 급여수술 보장계약]

특약보험기간 중 「피보험자가 "수술보장대상 질병 또는 재해"로 인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(1일 1회의 통원에 한함) 하여 "아주심한 급여수술"」을 받았을 때: 아주심한 급여수술급여금 (입원 또는 통원 1회당 1회에 한하며, 수술코드당 연간 1회에 한함)

## [심한 급여수술 보장계약]

특약보험기간 중 「피보험자가 "수술보장대상 질병 또는 재해"로 인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(1일 1회의 통원에 한함) 하여 "심한 급여수술"」을 받았을 때 : 심한 급여수술급여금 (입원 또는

#### 제2-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

- ① 특약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 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. 다만,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가 "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"에 의해 납입면제가 된 경우 그 "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"의 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, 이 특 약이 해당 약관의 「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」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 험료 납입면제가 되지 않습니다.
- ② 재해는 특약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며, 특약보험기간 중 발생 한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중 해당 재해와 관련한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③ 제2-2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의 경우 "간편심사형"에 한하여, 계약일부 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"아주심한 급여수술" 또는 "심한 급여수술"을 받았을 때에는 <부표2-1> "보험금 지급기준표"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.
- ④ 피보험자가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 은 경우 퇴원일 또는 통원일을 기준으로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하나의 수술코드에 한하여 급여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 다.

#### 제4항에 대한 설명

ADRG는 1회의 입원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더라도 KDRG에서 정한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생성이 됩니다.

## [예시]

피보험자가 입원을 하고 '치료적 자궁소파술(N141)'과 '복강경을 이 용한 주요 자궁절제술(악성종양 제외)(NO21)'을 동시에 받은 후 퇴원 할 경우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생성되는 ADRG는 '복강경을 이용 한 주요자궁절제술(악성종양 제외)(N021)'입니다.

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하거나 동일한 의료기관에 퇴원 후 다른 일자에 재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제2-2

- 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.
- ⑥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도 피보험자가 계속입원 중에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(피보험자의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며,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)에 제2-2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.
- ①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피보험자가 유방재 건술(수술코드상 J051 또는 J052, 이하 동일)과 유방절제술(수술코드 상 J061 또는 J062를 말하며, J063은 제외, 이하 동일)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유방재건술이 아니라 유방절제술에 해당하는 수술코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급여수술급여금만 지급합니다. 다만, 그 수술코드(유방절제술)로 보장계약별 급여수술급여금을 지급받은 보장횟수가 연간 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-2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에 따라 해당 보장계약의 급여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#### 제7항에 대한 설명

피보험자가 입원을 하고 유방재건술(J051)과 유방절제술(J061)을 동시에 받은 후 퇴원할 경우 생성되는 'ADRG'는 유방재건술(J051)입니다. 다만, 이 경우 회사는 제7항에 따라 유방재건술(J051)에 해당되는 수술급여금이 아니라 유방절제술(J061)에 해당하는 수술급여금을 보장합니다.

- ⑧ 피보험자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정한 "요양급여"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서 정한 "의료급여"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수술하였으나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주진단범주(MDC)와 의료행위 등으로 이 보장에서 정한 수술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제2-1조의3("급여수술"의 정의와 장소) 1항에서 정한 "급여수술"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.
- ⑨ 각 보장계약별 급여수술급여금은 "수술코드당 연간 1회"를 지급한도로합니다. 또한, "연간"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. 다만,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.

## 제2-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

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- 1.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,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- 2.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,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.
- 3.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
#### 심신상실

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 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

#### 제2-5조 사고증명서

- ① 제1-5조(보험금 등의 청구) 제2호에서 말하는 이 특약의 사고증명서는 "사망진단서, 진단서(병명, 분류코드, 수술명, 수술일자 포함), 진료비세 부내역서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코드(EDI) 필수기입), 입원치료확인서, 통원치료확인서, 수술확인서(수술기록지 등), 진료비계산서, 진료기록부 (검사기록지 포함),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"을 말합니다.
- ②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, 국민건강보험공단,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.

#### 제2-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

이 특약은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#### 제2-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

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)를 피보험자로 하며, 피보험자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.

#### 법정상속인

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 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

#### 민법 제 1000조(상속의 순위)

-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.
  - 1. 피상속인의 직계비속
  - 2. 피상속인의 직계존속
  - 3. 피상속인의 형제자매
  - 4.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
-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.
-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
<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.> 민법 제 1001조(대습상속)

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 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.

<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.>

#### 민법 제 1003조(배우자의 상속순위)

-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
-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

<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.>

##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#### 제2-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

-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이 특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.
-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각 보장계약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각 보장계약별 해지된 것으로 보며,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-11조(해약환급금)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 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, 감액 이후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최초 가입 당시에 안내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

#### 감액처리에 대한 설명

#### [ 감액 ]

보험료, 보험금,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(이에 따라 보험료,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액(해약환급금)도 줄어듭니다.)

#### [ 해지 ]

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

#### [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의 해약환급금 지급 예시 ]

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 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.

구 분	감액전	감액후
보험가입금액	1,000만원	500만원
감액시점의 해약환급금	400만원	200만원
감액할 때 지급금액	200만원 ( = 400	만원 - 200만원 )

#### 계약자적립액

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
##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

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,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<sup>㈜</sup>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.

㈜ 산출기초율 : 계약체결비용, 계약관리비용, 이율 및 위험률 등

## 제2-8조의2 "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"에 대한 특칙

제1-13조[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] 제1항

부터 제5항을 따르며, 이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할 때 계약자는 모든 보장계약에 대해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해야 합니다.

#### 제2-8조의3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

- ① 회사는 "KDRG", "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규정"이 폐지 또는 개정되어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드리며,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.
-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안내할 경우 특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(등기우편 등), 전화(음성녹음)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 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용, 보험료 변경내용, 특약내용 변경 절 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안내합니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"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"(이하 "산출방법서" 라 합니다)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약내용 변경시점의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,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⑤ 제1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, 특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(또는 반환받을)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⑥ 이 특약의 일부 보장계약에서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장계약에 한하여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합니다.

## 제2-9조 특약의 소멸

-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  - 1. 주계약이 해지, 무효,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.